

海岸保全地區의 維持管理

해안보전 시설이란

(1) 해안보전 시설이란 해안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안보전 구역 내에 있는 제방, 호안, 흥벽 기타 해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즉, 해안보전 구역내에 있는 시설로 전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법상 모두 해안 보전 시설로 취급되어 당해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테면 해안관리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방, 호안일지라도 해안법상 해안보전시설로서 취급된다.

(2) 해안법에서 해안관리자가 관리하는 해안보전시설에 대하여는 특히 「해안관리자가 관리하는 해안 보전시설」로 규정하고 일반의 해안보전시설과는 구별하고 있다. 해안법에서 그의 신설 또는 개량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해안관리자
가 관리하는 해안보전시설에
한정되어 해안관리자의 사무가
국가의 기관 위임 사무이므로
이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
산으로 취급된다.

해안법에 의한 해안의 유지관리란

해안법에 의한 해안의 관리란, 진파, 고조, 파랑 기타 해수 또한 지반의 변동에 의한 피해로부터 해안을 방호하고 아울러 국토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공물관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법에는 해안보전시설의 신설, 개량 및 해안보전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제한등의 행정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호할 필요가 있는 일정의 해안구역, 즉, 해안보전구역의 관리는 국가가 소유하는 해변 및 수면의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안관리자는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서 구역에 따라 도도부현지사 (행안법 제5조 제1항) 또는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시정촌장 (동법 제5조 제2항), 항만구역, 항만 인접 지역 또는 어항구역과 중복되는 해안보전 구역에 대하여는 항만 관리자의 장 또는 어항관리자인 지방 공공단체의 장이 (동 제5조 제3항), 각각 관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것으로서 어항구역 또는 항만구역, 혹은 항만인접구역에 접하는 해안보전구역 중 어항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항만관리자의 장이 각각의 구역과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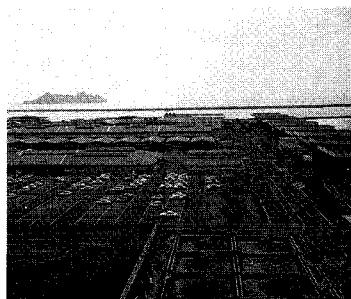
**해안법에 의한 해안의 관리란,
진파, 고조, 파랑 기타
해수 또한 지반의 변동에 의한
피해로부터 해안을 방호하고 아울러
국토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 바
공물관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하는 부분의 해안보전 구역과 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한편으로는 도도부현 지사와 전기 각각의 관리자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자의 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도 제5조 제4항)

또, 해안관리자를 달리하는 해안보전구역 상호에 걸치는 일연의 해안보전시설로서 하나의 해안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안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주무대신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는 해안관리자가 그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동 제5조 제5항)

해안보전구역 대장의 조제

해안 관리자는 해안보전구역 대장을 조제, 보관하고 열람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어 (해안



법 제24조) 해안보전구역 대장(이하 해안대장이라 한다)의 조제 및 보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정비에 있어서는 규칙 또는 통첩에 정하는 것외에 다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관리자명, 소유자명

(1) 해안관리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시설의 경우

관리자명은 「해안관리자OO현지사」, 소유자명은 「국가」로 기입한다.

(2) 해안관리자 이외의 자가

시행한 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경우

관리자명 및 소유자명 공히 「OO현 (시정촌)」 또는 「개인명」등을 기입한다.

나. 기타

일반적으로 사업이 준공된 시점에서 사업명과 그 수량을 해안대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않된다.

해안 관리자는 해안대장의 기재상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안사업의 관계서류등이 보존 기간을 지나 폐기등의 처분이 되기전에 반드시 해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안대장을 장래시설의 개량 등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생긴 경우, 재해복구사업을 실시 할 경우, 또한 시설의 목적의 사용 또는 처분등,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생긴 경우등에 그 기재가 불비하면 이들의 사무처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❶